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93
----------	-------

발의연월일 : 2026. 10. 14.

발 의 자 : 이수진 · 김남근 · 전진숙
이주희 · 백혜련 · 이광희
박지혜 · 이연희 · 남인순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중앙-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로서 통합·운영되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법」 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관련 위원회 연계) 중앙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터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성별영향평가기관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관련 위원회 연계) 중</u> <u>양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u> <u>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u> <u>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u> <u>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u> <u>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u> <u>회에 상정할 수 있다.</u>
<u>제13조의2 (생 략)</u>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u>성</u> <u>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u> <u>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u> <u>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u> <u>(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u> <u>지정할 수 있다.</u> 1. ~ 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제13조의3(현행 제13조의2와 같음)</u>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u>성</u> <u>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u> <u>체의 장은 -----</u> <u>-----</u> <u>-----</u> <u>-----</u> <u>-----</u> <u>-----</u>. 1. ~ 5. (현행과 같음) 6.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u>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u> <u>터</u> ② <u>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u> <u>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u> <u>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u>

<u>②</u> (생략)	<u>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	---